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0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신혜 의원외 18명
- 나. 제안일 : 2017년 2월 16일
- 다. 회부일 : 2017년 2월 17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신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임.
- 이 같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동 조례상에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활동 지원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안 제10조제5항은 현재 운영 중인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본 조례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 및 청년안전망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7월에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 위탁한 기관임.

<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21동 2층
- 시설규모 :	105.99㎡
- 위탁기간 :	11개월(2016.7.15. ~ 2017.6.30.)
- 주요사업 :	1) 청년활력충전 2) 청년안전망 구축 3) 청년지원정책 연구·홍보
- 소요예산 :	2,000,000천원('17년 예산)

-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활력 충전 사업, 청년안전망 구축 사업, 정책연구·홍보 사업 등이며,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불성립, 예산안 의결 무효화인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1개월간의 활동비 지급이후 중단된 상황임.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주요사업>

- 3개 분야 10개 사업		
청년 활력 충전(5개사업)	청년 안전망 구축(2개사업)	정책연구·홍보 (3개사업)
① 자발적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②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어슬렁 반사회 ③ 사회 진입에 필요한 기본 역량 지원 ④ 직무 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⑤ 기본스펙 쌓기 지원	⑥ 선정에서 후속연계 권역별 매니징 ⑦ 자원개발·연계를 통한 청년안전망	⑧ 정책연구 ⑨ 홍보·아카이빙 ⑩ 청년지원 네트워킹

- 한편, 20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하여 2017년 4월 7일 동의 회신을 받은바 있음.

<협의 진행 현황>

-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따른 협의서 제출('17.1.3)
- 1차(2017.1.13.) 및 2차(2017.3.9.)실무회의
- 협의결과 회신 요청 및 3차 실무회의(2017.3.23.)
- 동의회신 ('17.4.7)
- (주요사항) 1)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취업성공패키지) 는 제외
2) 모니터링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
- (권고사항) 1) 급여를 '카드'로 지급하는 방안 고려
2) 저소득계층 청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고려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1.1.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제한되나, '16년 사업대상자는 '17년 사업에 한하여 예외인정
-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소2개월~최대6개월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2개월 지급
 - 취·창업 등으로 자격상실일 다음달까지 지급
 - 3개월차 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지원내용 : 직접적인 구직활동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선정방법 : 1차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2차 정성적 평가
 - (1차 평가) 가구소득(60%),미취업기간(40%), 부양가족수(가점12%)
 - (2차 평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적절한지 등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평가
 - ※ 정성적 평가는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지급방법 : 클린카드 (청년미래카드)
- 소요예산 : 50만원 × 5,000명 × 6개월 = 15,000백만원(시비100%)
-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가구소득	제한없음	'17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기준	가구소득:미취업기간, 5:5	소득기준 강화 (소득6:미취업4)
지급방법	현금	청년보장카드
의무프로그램	없음	의무참가 프로그램 추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첫째, 현행 조례 제10조제4항에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둘째,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의원발의로 의회의결을 거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¹⁾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제공,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사무를 위해 2017년 45억원의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년허브와의 기능중복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위탁기간이 만료(2017년 6월 30일)되는 청년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예산 투입대비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는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가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로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아(2012. 10. 12) 민간위탁동의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장(場) 제공,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교류 사업,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개발 및 미래 혁신직업 공모사업 추진 사무를 연세대학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 비교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목적		- 청년고용, 직업에 대한 연구 및 청년정책 개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을 적극 지원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
총 예 산	예산	45억 3천 9백만원	20억원
	인건비	11억 1천 8백만원	8억 3천 8백만원
	사업비	30억 4,314만원	8억 8천 8백만원
주요 사업		- 청년커뮤니티지원 - 청년활동활성화지원 - 워킹그룹사업지원 - 청년학교운영 - 청년정책 연구공모 지원 등	- 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 지원대상자 선발 및 관리 - 교육, 강연, 멘토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근거 조항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u>청년정책 수립</u> 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u>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u>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u>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u>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u>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u>청년활동 지원 방안</u> 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u>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u> ,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u>청년활동 지원 업무</u>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 결론적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의 모호성, “청년허브”와의 기능·역할 중복,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⑤ <u>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